

정정신고(보고)

2022년 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KODEX MSCI World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7.18

3. 정정 사유

- 운용역 변경(박성철 운용역→정재훈 운용역)
- 투자대상 정정(장외파생상품 삭제)
-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표준편차 변동, 재무정보 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박성철 운용역	정재훈 운용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변경시행일</th> <th>변경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2022.2.24</td> <td>운용역 변경(박성철 운용역→정재훈 운용역), 투자대상 정정(장외파생상품 삭제)</td> </tr> </tbody> </table>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2.2.24	운용역 변경(박성철 운용역→정재훈 운용역), 투자대상 정정(장외파생상품 삭제)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2.2.24	운용역 변경(박성철 운용역→정재훈 운용역), 투자대상 정정(장외파생상품 삭제)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박성철 운용역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정재훈 운용역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h>세부설명</th> </tr> </thead> <tbody> <tr> <td>4)장외파생상품</td> <td>-</td> <td>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세부설명	4)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가. 투자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h>세부설명</th> </tr> </thead> <tbody> <tr> <td>(삭제)</td> <td></td> <td></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세부설명	(삭제)		
투자대상	투자비율	세부설명												
4)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투자대상	투자비율	세부설명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장외 파생상품에 한함)</p>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p>		
	5)~9)	(생략)	4)~8)	(현행과 같음)
	<p>※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6), 7), 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⑤ (생략)</p> <p>나. 투자 제한</p>		<p>※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3), 5), 6), 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⑤ (현행과 같음)</p> <p>나. 투자 제한</p>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동일 거래 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삭제)	
	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삭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빈번한 변경 및 갱신 과정에서도 오퍼레이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p>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p> <p>(삭제)</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16.24%</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17.75%</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업데이트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